

 <h1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<b>2016. 4. 26(화)</b>	
	작성 · 문의	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(044-200-2056) 국조실 법무행정과장 전창현 (044-200-2089) 국조실 금융정책과장 조문희 (044-200-2190) 국조실 식품의약품정책과장 김성곤 (044-200-2379) 국조실 안전관리과장 신강민 (044-200-2346)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김형수 (02-2110-3597)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김기한 (02-2156-9470)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김성진 (043-719-2808) 대검찰청 마약과장 김태권 (02-3480-2292) 안전처 소방제도과장 손정호 (044-204-6150)
* 엠바고 : 4.26(화) 15시30분 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안전처, 식약처, 대검찰청 # 브리핑 : 4.26 16시, 정부세종청사, 식약처장·대검 강력부장,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		

## 불법사금융, 마약 등 민생·안전 침해범죄 근절 본격 추진

- (불법사금융) 일제신고기간(6.1~7.31) 운영 및 집중단속, 피해자 구제·금융지원도 강화
- (마약) 특송화물·인터넷 불법거래 집중 단속하여 마약유입 및 범죄 차단
- (화재) 화재저감을 위해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추진, 부실시공사 처벌 강화

□ 정부는 4.26(화)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·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「불법사금융 근절대책」, 「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」, 「화재저감 종합대책」, 「법교육·법질서 실천운동 추진계획」을 논의·확정하였다.

\* 참석자 : 법무부·행자부·환경부·고용부·안전처 장관, 국조실장, 금융위원장, 산업부·국토부 차관, 식약처장, 관세청장, 경찰청장, 금감원장 (잠정)

## 1. 서민·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

- 정부는 불법사금융\*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단속·검거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, 이에 힘입어 불법 대부업,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\*\*에 있다.

\* 불법사금융 유형 : 불법 대부업, 불법 채권추심, 유사수신 행위, 금융사기

\*\* 4대 불법사금융 추이(만건): ('14) 6.9 → ('15) 5.9

- 하지만, 최근 범죄의 지능화·다양화,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\*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.

\* '16.3월 최고금리 인하(연 34.9%→27.9%) 후 등록 대부업체의 음성화, 대출 거절자의 사금융 이용 가능성 등에 따른 불법 대부업 증가 우려 존재

-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「서민·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」을 마련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불법사금융 신고 활성화 및 집중단속 강화

-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, 신고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불법 대부업체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일제신고기간('16.6.1~7.31, 2개월간)을 운영한다.
- 신고된 내용은 금감원 '불법사금융 신고센터' 내에 별도의 '합동 신고처리팀'을 구성·운영하여 피해상담, 피해구제,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해 나간다.

<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 운영 >

- (신고기간) '16.6.1(월) ~ 7.31, 2개월간
- (신고대상) 불법고금리 수취, 미등록 대부업 영위, 폭행·심야 방문 등 불법채권추심,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
- (신고방법) 전화[☎ 1332(금감원), ☎ 112(경찰), ☎ 120(지자체)], 인터넷(금감원, 경찰청 홈페이지), 방문접수(금감원, 경찰서) 등
- (신고 처리) 금감원 '불법사금융 신고센터' 내에 '합동신고처리팀'을 구성·운영하여, 신고접수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

-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, 검찰·경찰·금감원·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과 점검을 실시하고,
  -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·문자 등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즉시 사이트 폐쇄, 문자 차단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.

## 2. 권리구제 및 정책금융 지원확대

-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고, 서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.
  - 우선,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\*, 형사고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내 법률지원팀을 별도로 설치하고,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및 법률상담 서비스도 적극 실시한다.
-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·새희망홀씨 등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\*하고, '서민금융진흥원\*\*'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윈스톱·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
\*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, 불법채권추심 고발절차 등

\* 저리 정책자금 공급 : 연 4.7조원(47만명) → 5.7조원(60만명) 규모로 확대  
(△햇살론) 2.0조원→2.5조원 △(새희망홀씨) 2.0조원→2.5조원 △(미소금융) 0.3조원→0.5조원 등)

\*\* 현행 햇살론·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자금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('16.9 출범 예정)

### 3. 교육·홍보 강화

-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교육·홍보 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대처 능력을 제고해 나간다.
  - ‘금융소비자 경보발령’<sup>\*</sup>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를 신속히 전파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,
    - \* 동일 유형 또는 신종 피해사례 발생시 (1단계) 소비자 주의 → (2단계) 소비자 경보
  -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(주부·노인·은퇴자·농어촌주민·대학생 등)을 중심으로 ‘금융사기 피해예방’ 교육자료 등을 통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또한, 서민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신고요령, 피해 구제방안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,
  - 수사결과 범죄수법, 피해유형 등을 별도 정리하여 단속기관·일반 국민에게 전파·공개(검찰, 경찰청)할 계획이다.

## 2.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

-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, 최근 인터넷·SNS·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,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.

※ 마약류 : △마약(아편, 코카인 등) △향정신성의약품(필로폰, 프로로폴 등) △대마 등 3종류로 구분(총 339개 성분 지정, '15년)

-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으며, 적발·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.

\* 마약류 사범(명) : ('11) 9,174 → ('12) 9,255 → ('13) 9,764 → ('14) 9,984 → ('15) 11,916

\*\* 마약류 압수량(g) : ('13) 76,392 → ('14) 87,662 → ('15) 93,591

-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, △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△인터넷·SNS 상 불법거래 확산 △신종 마약류 출현 △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△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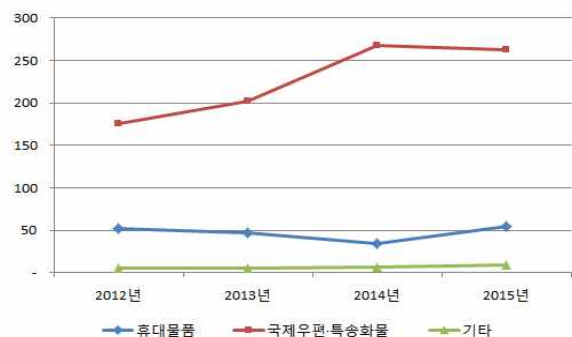
- 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여 「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」을 마련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

- 우선,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,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간다.

< 마약류 밀반입 적발 현황 (단위 : 건) >

연도	'12	'13	'14	'15
계	232	254	308	325
특송화물 국제우편	175	202	268	262
개인휴대물품	52	47	34	54
기타	5	5	6	9



○ 이를 위해 금년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\*를 실시할 예정이다.

\* 특송업체 물류창고에서 X-ray 검사를 실시할 때, 특송물류센터에서도 '원격관독 시스템'을 통해 실시간 검사 실시 → 의심화물은 특송물류센터로 이송·집중 검사

○ 국제우편·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·항만 등에 배치한 '마약탐지조\*'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하고,

\*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두로 편성, '15년 112건 적발(전체 적발의 34%), 현재 인천·김포 등 7개 공항·항만에서 운영중

○ 마약류 관련 정보(우범자, 적발사례, 마약범죄 동향 등)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'마약정보포털'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□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'검·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'을 최초로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한다.

< 검·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>

▪ (현황) 전국 14개 지역에 설치

▪ (주요 단속내용) △인터넷·SNS 이용 마약류 판매사범 △청소년 등에 대한 마약류 공급사범 △외국인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 △클럽 주변 등 마약류 집단사용 가능성이 있는 장소 기획수사 등

□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'자동검색 프로그램(e-로봇)'을 구축하여('16.하반기)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,

\* (현행) 업무시간 내 수작업 모니터링 → (개선) 24시간 자동검색 모니터링

○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·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·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\*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.

\* 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' 개정 추진 ('16.8)

## 2.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예방

-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 마약류 물질의 분석·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임시마약류\*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\*\*해 나간다.

\* 오용·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(현재 총 73개 물질 관리중, 식약처)

\*\* (현재) 4~5개월 → (개선) 절반 수준인 2~3개월로 단축 추진 ('16.6)

-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'제조·수출입·유통·투약·폐기'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'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\*'을 활성화하여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\*\*을 방지하고,

\* 의료용 마약의 제조·수출입·유통·투약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 (현재 제약사·병원·약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)

\*\* (사례) '11년 환자 1명이 1년간 93개 병원에서 수면제(졸피뎀) 4,139일치를 처방 / '15년 성형외과 실장이 프로포폴 불법 과다 투약으로 사망

- 제약사·병원·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.

\* △의료용 마약('16) △향정신성의약품('17.하반기)

<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도>



### 3.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

-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,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.
- 우선,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\*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('16, 26개소 → '17, 56개소)하고, 再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·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,
  - \*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면담·현지출장조사·투약검사 등을 통해 전담 관리하는 제도
-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.
- 또한,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△마약범죄 자수기간(4~6월) △가정의 달(5월)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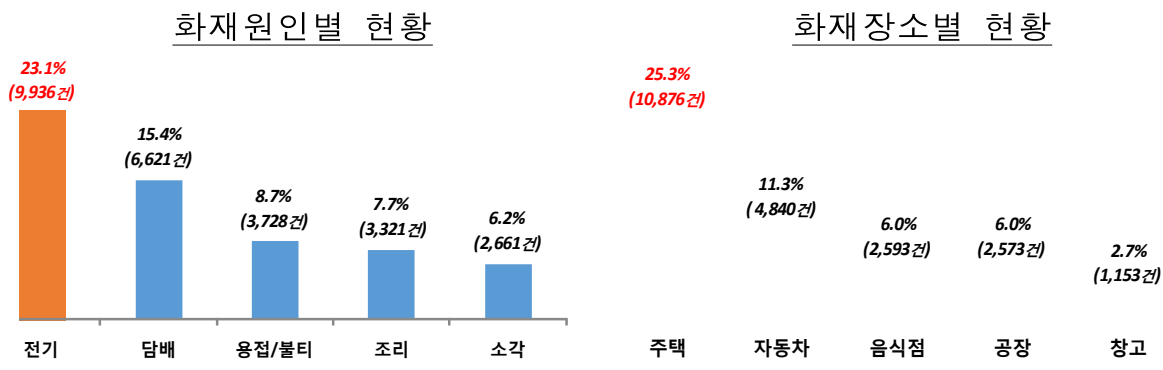
※ 【참고1】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전·후 비교

【참고2】 검·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편성·운용 및 IT 시스템 구축



### 3. 화재저감 종합대책

- 정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재발생을 향후 10년간('16~'25) 현재 보다 20% 줄이는 것을 목표로 「화재저감 종합대책」을 마련하였다.
  - 그동안 정부는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,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
    -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\*하고 있고, 이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손실\*\* 및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.
- \* 화재 발생(건) : ('13) 40,932 → ('14) 42,135 → ('15) 44,435
- \*\* 최근 5년간 평균 △인명피해 2,108명(사망 283명, 부상 1,825명) △재산피해 3,637억원
- 이번 대책은 사고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존의 대책들을 보완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, 화재원인 및 취약장소에 대해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## 1. 화재 발생 요인의 제거

□ 우선, 전기·담배 등 주요 화재원인별\*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

\* 화재 원인 : 전기 23% > 담배 15% > 용접·불티 9% > 음식물조리 8% 順

○ (전기) 지금까지 공장·사업장(전기사용량 1천kw 이상)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전기 발열량 측정을 금년부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한다.

\* 정기 점검시 적외선 열화상 장비를 활용하여 전기기기 발열량 측정(산업부)

- 또한 건축물이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지역아동센터(1,527개소)를 대상으로 노후·불량 전기설비를 무료로 개선('15~'19년)해 나가고,

\* 쪽방촌(4,747개소) 노후 전기설비는 기 개선 완료

-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정전·누전 발생시 24시간 전기안전 응급 조치도 무료로 실시('16년, 62,600호 대상)한다.

○ (담배) 화재발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재 PC방,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을 향후 노래 연습장,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\*을 마련할 계획이다.

\* 화재발생률, 국민건강 및 정서 등을 고려, 업종별로 단계적 추진

○ (용접·쓰레기) 화재발생 위험이 큰 용접작업장\*에는 그동안 안전 관리자만 배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,

- 농촌 지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, 아울러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소각행위 신고포상제\*\*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.

\* 샌드위치 패널 등 단열재가 설치된 일정면적 이상의 공사장 등(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)

\*\* 환경범죄단속법(제15조)을 바탕으로 표준조례(안)을 마련, 시군구에 권고·활성화

- (음식물조리) 음식물조리 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스타이머<sup>\*</sup>을 무료로 보급하고,
  - \* 설정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 / '16년 51,450가구 보급 예정
-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는 중식당, 패스트푸드점 주방 등에는 K급 소화기<sup>\*</sup>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할 예정이다.
  - \* 중탄산칼륨(KHCO<sub>3</sub>)을 주성분으로 유막층을 형성하여 질식소화 효과 탁월

## 2. 화재취약장소 중점관리

- 화재발생이 많은 주요 화재취약장소<sup>\*</sup>에 대한 중점관리 등 화재예방 시스템이 한층 강화된다.
  - \* 화재발생 장소 : 주택 25% > 자동차 11% > 음식점 6% > 공장 6% 順
- (주택) 아파트·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을 확대(11층 이상 → 6층 이상)하고,
  -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(소화기, 화재경보기)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기로 하였다.
    - \* 신규 주택은 '12.5부터 설치 의무화 / 기존 주택은 '17.2까지 설치 완료 필요
- (자동차) 캠핑용 자동차의 전기설비(물 유입 방지장치, 충전기 보호장치 등)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.
- (취약장소)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, 공장, 창고 등 화재취약장소에 대해 현재는 10년 주기로 점검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에 한번 씩은 점검을 받도록 점검주기를 단축한다.
  - \* (현재) 소방점검 대상중 매년 10%에 대해 점검 실시 → 매년 20%
- (피난 약자(弱者) 시설) 산후조리원, 요양병원 등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대피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,

- 피난 약자시설이 들어있는 건물 내에는 주점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할 계획이다.

### 3.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운동 정착

- 건축물의 화재예방 성능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, 화재연구 기능 활성화 등 화재저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.
  - 우선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상부의벽에는 불연성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,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마감재료는 불연·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.
    - \* '16.4월 법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·준공시 확인감독 강화
  - 아울러 건축관계자가 내화구조, 방화벽, 불연재료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, 안전관련 위반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\*하며, 내년까지 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    - \* (현행) 1천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선) 1억원 이하 벌금
  - 지능형 소방용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\*하는 한편, 화재 관련 산·학·연 협업도 활성화(소방과학연구실 기능 강화) 한다.
    - \* 유선통신 기능만 가진 소방용품(감지기·수신기)을 사물인터넷(IOT) 기술과 접목된 무선통신 지능형 소방용품으로 개발 (향후 2년내 인증기준 마련)
- 아동·청소년·성인 등 연령대별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교육\*을 실시하고, 소방안전체험관 및 소방관서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.
  - \* 누리과정 화재예방 교육 실시, 초중고 교육과정에 안전교과·안전단원 신설 등
  - 또한,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화재 안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안전확인 스티커 배포,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실시 등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.

※ 【참고3】 ‘화재저감 종합대책’ 추진전략

## 4. 법교육·법질서 실천운동 추진계획

□ 정부는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, 우리 사회 전반에 준법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교육과 법질서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우선, 지자체·마을 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지역주민, 소외 계층 청소년(소년원 출원생, 탈북·다문화 청소년)에 대한 맞춤형 법교육\*을 강화하고,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·청소년 대상 법교육(16.8~)도 활성화한다.

\* 법사랑 멘토링 지원, 국토순례 등 융합형 법교육 프로그램 등

○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중(15~)인 11개 지역에 대해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, 범죄예방 자치활동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.

\* 범죄취약 환경을 개선, 범죄기회 요인 제거 (CCTV, 비상벨, 보안등 설치, 담장도색 등)

\*\* 동작, 성동, 수원, 안산, 부천, 평택, 파주, 양주, 창녕, 포항, 남원 등

□ 또한, 한국야구위원회(KBO)와 MOU를 체결(16.5)하여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'배려, 클린스포츠 문화\*'를 확산시켜 나간다.

\* 선수·심판 대상으로 스포츠비리 예방 법교육, 야구장 준법 캠페인 등  
(대한축구협회('10.9), 한국프로농구협회('16.3)와 기 MOU 체결)

○ 지역특성에 맞는 '배려 실천' 주제를 선정\*하여 지자체·유관기관·민간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 실천운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.

\* (사례) 광주·전남지역, '교통문화 실천운동' 전개('15.10~), 교통사고 건수 10% 감소 성과

□ 자유학기제 등 체험형 법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, 대전에 이어 부산에도 법교육 테마파크(솔로몬로파크\*)를 설립(개칭, '16.7)하고, 앞으로 지역별(수도권·호남권 등)로 설립·운영을 확대해 나간다.

\* 대전 솔로몬로파크('08.1) : 선거체험, 모의 국회, 모의 재판 등 프로그램 운영

# 참고 1

##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전·후 비교

단계	업무내용	현행	개선사항
통관	특송화물 검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X-ray 검사 실시</li> <li>- 의심화물에 대해 세관 직원이 특송업체에 출장검사</li> </ul>	<p>&lt; 특송물류센터 신설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송업체 X-ray 검사시 원격 판독시스템으로 동시 검사</li> <li>- 의심화물은 특송물류센터로 전량 반입, 집중검사 실시</li> </ul>
	마약범죄 정보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우범 정보, 적발사례, 은닉수법 등 수사 전파</li> <li>- 공문 등을 통해 세관 마약조사 직원에 제공</li> </ul>	<p>&lt; 마약정보포털 구축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우범 정보 등 실시간 공유 (관세청 자체시스템 활용)</li> <li>- 정보 제공대상 확대 (조사부서 → 통관부서)</li> </ul>
유통	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울중앙지검 중심 인터넷 마약범죄 전담수사팀 편성 및 모니터링 실시</li> <li>- 단순 수작업 모니터링</li> </ul>	<p>&lt;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, 24시간 상시 모니터링</li> <li>- 사이트 즉각 폐쇄 조치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터넷에서 마약류 광고행위 처벌규정 부재</li> </ul>	<p>&lt;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 등 광고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</li> </ul>
	인터넷 마약사범 단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검찰)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마약범죄 전담수사팀 편성·운영</li> <li>- 전국 검찰청 강력부에 모니터링 요원 배치</li> <li>- 모니터링 통해 사이트 차단</li> <li>· 폐쇄 및 인터넷 이용사범 수사</li> <li>· (경찰) 지방청 마약수사대, 거점지역 경찰서 전담팀</li> </ul>	<p>&lt; 검·경 합동수사반 편성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검찰청에 '합동수사본부', 14개 '지역 합동수사반' 편성</li> <li>- 인터넷 불법거래 집중단속</li> <li>-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 사범 엄단</li> <li>- 외국인 마약류 유통사범 철저히 단속 등</li> </ul>

투약 사용	신종마약류 관리	·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·운영 - 지정에 총 4~5개월 소요	<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단축 > ·임시마약류 우선평가 - 총 2~3개월내 지정완료
	의료용 마약류 관리	·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내역을 합동감시 등을 통해 점검	<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> ·제조·유통·투약 등 취급내역 상시 모니터링 - 불법유출 및 과다처방 방지
사후 관리	보호관찰 대상자 관리	·26개 보호관찰소에서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 ·보호관찰자 대상 비정기적 투약검사 - 반기별 1회	<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 확대 > ·전국 56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(30개소 추가)  ·투약검사 강화 - 재범 위험성에 따라 월 1회, 분기 1회, 반기 1회로 실시
	상습 투약자 치료	·일부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중독성이 심한 마약류 사범 치료프로그램 연계	< 치료프로그램 활성화 > ·중독수준이 높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외부 전문가 연계 후 상담실시 - 한국중독전문가 협회 MOU 체결('16.4월말) 추진
대국민 홍보	오남용 예방홍보	·식약처 위주의 대중매체, 박람회, 캠페인 등 홍보	< 관계부처 협력 집중홍보 > ·부처별 홍보수단 공유 - 정책포털·전광판·페이스북 등 ·주요 행사기간 대국민 홍보 - 마약범죄 자수기간 등 ·콘텐츠 다양화로 맞춤형 홍보 - TV광고 및 웹드라마 제작 ·연령대별 사이버 교육 실시 ·상담콜센터 설치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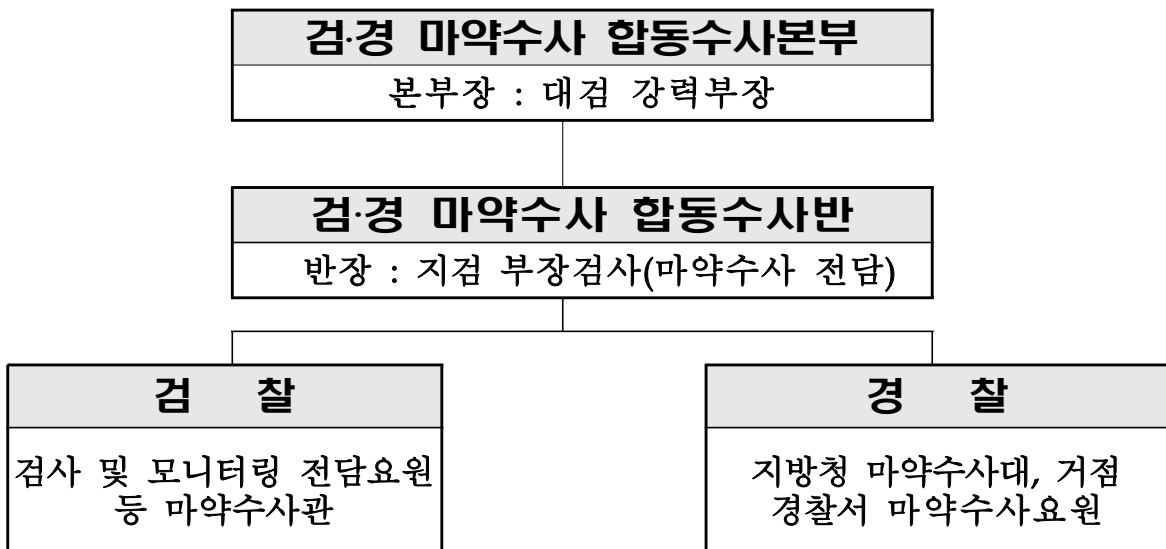
**I**

**사상 최초 『검·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』 편성·운영**

**1] 합동수사반 편성**

- 사상 최초로, 마약수사에 대해 전국 규모 검·경 합동수사 실시
- 대검찰청 강력부에 『검·경 합동수사본부』를 설치하여 단속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, 국제공조 등 필요사항 지원, 14개 지역에 설치된 합동수사반 지원 등 운영 통할
  - ※ 본부장 : 대검 강력부장, 위원 : 경찰청 수사국장 및 형사과장, 대검 마약과장
- 전국 18개 지방검찰청(서울 동·남·북·서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편성) 마약전담검사,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 포함 검찰 마약수사관, 17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및 17개 거점경찰서 마약전담 경찰관 전체로 구성하여 14개 지역 『검·경 합동수사반』 편성

[검·경 합동수사반 편성표]





## ② 합동수사반 운용 방향

- 수사 초기단계부터 합동수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신병처리 및 공급자 철저 수사토록 운영
- 모니터링 자료 공유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,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
- 강력한 단속으로 수사성과 거양하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 옹호에도 만전

## ③ 중점 수사 대상

- 인터넷 마약범죄 집중 단속(검·경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 활용)
-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 엄단
  - ※ 대검, 청소년 상대 마약류공급자 가중처벌 조항 적극 의율 지시('15. 9.)
- 외국인 마약류 유통사범 철저 단속
- 클럽 주변 등 집단 사용지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기획수사 실시
-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의료용 마약류 합동단속 지속 전개

## ④ 단속사범 처리

- 대형 밀수 사건 등 중요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엄정히 수사
-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, 투약자라 하더라도 동종전과, 마약류 투약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
- 단순투약자·청소년 등에 대하여 치료·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활용하고, 치료의지 있는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
- 밀수사범 및 유통사범은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범죄로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중형 선고되도록 조치
  - ※ 대검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 적극 의율 지시('15. 6.)
-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출한 우리국민의 강제송환 추진 등 국제공조 강화

## II

## IT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악용 범죄 척결

- 인터넷 24시간 상시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  - '16년 하반기 중 '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'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, 불법사이트 즉각 폐쇄·차단 조치
  - 검·경이 합동하여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, 적극적으로 추적수사
- 확산 초기 단계에 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
  - 마약류 유통의 기반인 인터넷·SNS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 마약류가 확산되기 전 초기단계에 신속히 엄단 가능
  - 검찰·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(각종 간행물, 유인물, 전화, 인터넷,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 포함 등)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 신설 추진

**참고 3**

**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전략**

**비전**

**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**

**목표**

**10년간('16~'25년) 화재 20% 감소**

\* 단계적 감축목표 : '17년(7%) → '20년(14%) → '23년(18%) → '25년(20%)

추진 전략 및 과제	추진전략(4)	중점 추진과제(12)
	화재요인 제 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전기) 안전점검방법 및 노후전기설비 개선</li> <li>② (담배) 담배로 인한 화재위험 축소</li> <li>③ (용접·쓰레기) 화재감시자 배치, 불법소각 단속 강화</li> <li>④ (조리) 주방 화재안전시설 기준 강화</li> </ul>
	취약대상 중점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주택) 주거생활공간 안전관리 강화</li> <li>② (자동차) 자동차 소화기 비치 확대</li> <li>③ (취약대상)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</li> <li>④ (피난약자 거주시설) 안전관리기준 개선</li> </ul>
	화재저감 인프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법·제도)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, 처벌 강화</li> <li>② (연구) 첨단 장비 개발 등 화재연구기능 강화</li> </ul>
	안전문화운동 정 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홍보) 맞춤형 화재예방 홍보·교육 확대</li> <li>② (안전문화) 국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전개</li> </ul>